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1.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종길 의원 등 9명(임미연, 이선주, 이영빈, 정순옥, 고명옥, 남현주, 강한곤, 박정환)
- 발의일자: 2023. 3. 3.
- 회부일자: 2023. 3. 3.
- 상정 및 의결
 - 2023. 3. 15.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보류)
 - 2023. 3. 21.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수정가결)

2. 제정이유

-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11조)
-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4조, 제41조
 -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13.):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김병욱)

-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생태관광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 조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비용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 제13에서는 생태관광지의 지정·육성과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우리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 구민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므로 생태관광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내용: 붙임 수정안과 같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7조(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①</u> <u>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u></p> <p><u>1.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u></p> <p><u>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p> <p><u>3. 관계 공무원</u></p> <p><u>4.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u></p> <p><u>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u></p>	<p><u><삭 제></u></p>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지원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삭 제>

<삭 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삭 제>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삭 제>

제7조 ~ 제9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